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558
------	------

2016. 12. 6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2월 1일, 맹진영의원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2월 1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】

-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(2016.12.6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맹진영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 관리를 금지함에 따라 투·융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도입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(안 제2조제4항)
- 나. 기금의 용도에 수행기관의 비융자사업비 지원 항목 신설(안 제4조제6항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투·융자대상의 결정, 기금운용현황 보고, 수행기관의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)
-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- 마. 시 직영 관리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(안 제9조)
- 바.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한 사항 삭제 (안 제9조제2항, 제10조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사회투자기금이 지난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, 2017년부터 시 직영관리체제로 전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사회투자기금 운용 현황

- 사회투자기금(이하 “기금”)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으며, 2016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03억 9천 5백만원이고, 2017년 기금의 운용 규모는 약 213억 8천 9백만원임.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융자사업, 소셜하우징 융자사업, 중간지원기관 융자사업,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평균 1.2%의 금리로 최대 5년간 자금을 융자해왔으며, 기금설치 이래 1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489억 2,900만원을 융자하였음.

#### 〈사회투자기금 융자 실적〉

(단위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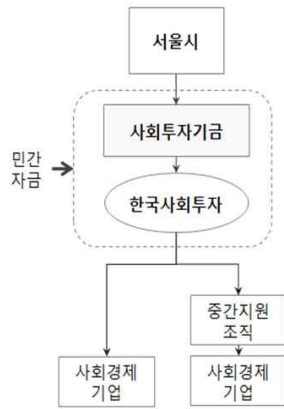
구 분	용 자				
	합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 (10월까지)
합계	48,929	10,900	7,488	14,612	15,930
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	15,940	10,290	2,800	1,850	1,000
소셜하우징융자사업	17,281	310	4,012	5,003	7,956
사회주택활성화융자	940	-	-	-	940
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	11,386	-	500	5,711	5,175
소셜임팩트본드 융자사업	300	300	-	-	-
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	3,082	-	176	2,048	859

- 사회투자기금은 현재 (재)한국사회투자에서 위탁운용 중(위탁기간: ~'16.12)이며 2017년부터는 투·융자 방식을 통해 시에서 직영할 예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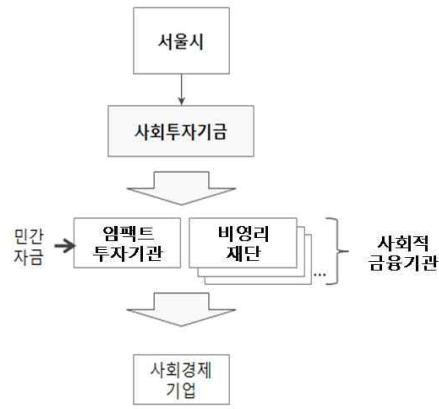
#### 다. 사회투자기금의 시 직영관리 및 수행기관 지원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기금의 운용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대손에 관한 사항과 수행기관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금의 시 직영 체제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【 개편 전 】



【 개편 후 】



- 시는 기존 위탁기관을 통해 시행했던 사회적기업 용자, 소셜하우징 용자,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,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,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등 다섯 가지 용자 사업(2016년 기준) 대신,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용자를 통한 채용자방식의 ‘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’과 ‘소셜하우징 용자 사업’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임.
- 시가 직접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선정기관을 통해 채용자하는 방안은 시의 법률 자문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 결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상의 민간위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. 【참고자료-행정자치부 공문】
-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은 시가 직접 공모를 통해 역량이 풍부한 중간지원기관(사회적 금융기관)을 선정하여 연 0~2%로 융자하고, 중간지원기관이 이와 일정비율(시:민간 1:1~3:1)의 매칭자금을 자체 조달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% 이하의 금리로 채용자하는 구조임.
- 시는 약 4개의 중간지원기관 용자를 예상하고 있으며, 기존의 사회적기업 용자,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등은 본 용자사업을 통해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임.
- 한편 ‘소셜하우징 용자사업’은 ‘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’과 마찬가지로 시가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에 저금리(연 0~2%)로 융자한 후, 시와 민간이 1:1~3:1의 매칭방식으로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주택 및 건설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% 이내로 채용자하는 것임.

〈중간지원기관 용자-소셜하우징 용자 비교〉

구분	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	소셜하우징 용자
중간지원기관 선정	서울시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중 시에서 직접 선정(연 2회 예정)	
용자 조건 및 기간	선정기관은 시와 1:1~3:1로 자금 자체 조달	
	연 0~2%, 최대 5년	연 0~2%, 최대 8년
채용자 대상	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	서울시의 건설·주택분야 사회적경제기업
채용자 조건	연 4% 이내	

- 다만 기존에 (재)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운용했던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 내역을 평가해 보면, 일부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2013년 시로부터 용자금을 2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(자체자금 포함 총 조성금액 4억원) 재 용자 내역이 조성 금액의 14.5%인 5천 8백만원에 불과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중간지원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.
- 따라서 시는 용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거나,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- 안 제4조제6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‘비용자사업비’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.
- ‘비용자사업비’는 용자 이외에 용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·컨설팅비용 등으로 예상되나, 구체적으로 그 지원 범위와 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자칫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, 이를 명확하게 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,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, 이미 용자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들에게 추가적으로 ‘비용자사업비’를 지원하는 것은 선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중복지원으로 비취질 우려도 있음.

####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 (안 제6조~제8조)

- 시는 안정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·운영해왔으며, 안 제6조~제8조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, 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강제 규정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 증가 등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개정안에 따르면, 위원회는 기존 최대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되고, 수행기관 선정과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을 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,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절한 측면도 있음.
- 다만, 본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에 중요한 부분인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“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(안 제9조제3항)”라고 규정하여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에 따른 채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부실 방지대책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부실한 운영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,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

법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출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사후적으로는 대손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할 세부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.
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0조(면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(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)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(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(연납이자를 제외한)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한편 시는 약 400억원으로 예상('16년말 기준)되는 기존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융자 심사를 담당했던 (재)한국사회투자에 계속하여 위탁할 예정으로, 본 채권 상환 소요경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및 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  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6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대상의 선정과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대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.(안 제6조제6호, 안 제9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, 제6조제7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&lt;신 설&gt;</span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용 자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 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 1.~ 5.(생략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&lt;신 설&gt;</span> 6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~ 5.(현행과 같음) 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	제4조(기금의 용도)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생략) 1.~ 3.(생략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&lt;신 설&gt;</span> 4. (생략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~ 3.(현행과 같음) 4. 기금운용현황 보고 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. 대손에 관한 사항 7. (현행 제4호와 같음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개정안과 같음) 1.~ 5.(개정안과 같음)  <삭 제> 6. (개정안 제7호와 같음)
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 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 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15명----- -----. ② -----위원 중에서 호선 ----- -----재정담당 부서장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(개정안과 같음)
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&lt;신 설&gt;</span>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/3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 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 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.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(개정안과 같음)

⑥ ~ ⑨ (생략)	⑦~⑩ (현행과 같음)	
<p>제9조(기금의 관리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하며,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③ 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⑥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기금의 관리)</p> <p>①~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  (생략)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	
<p>제11조(결산 및 보고)  (생략)</p>	<p>제10조(결산 및 보고) 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결산 및 보고) 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2조(존속기한)  (생략)</p>	<p>제11조(존속기한) 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존속기한) 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 (생략)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 (개정안과 같음)</p>



#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6호를 제7호로 한다.

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

제6조제4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.

4. 기금운용현황 보고
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"10명"을 "15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기금업무 소관 국장"을 "위원 중에서 호선"으로 하며, "예산담당 부서장"은 "재정담당 부서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인정하는 때에는"을 "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.

-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.

제9조제2항,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3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,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-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-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, 제12조, 제13조를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 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 1.~ 5.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6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~ 5.(현행과 같음) 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유자사업비 지원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생략) 1.~ 3.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  4. (생략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~ 3.(현행과 같음) 4. 기금운용현황 보고 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. ②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</u> ----- ----- <u>재정담당 부서장</u>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 ④ ~ ⑤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⑥ ~ ⑨ (생략)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</u> ----- 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. ⑦~⑩ (현행과 같음)
제9조(기금의 관리)	제9조(기금의 관리)
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① <u>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⑤ <u>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0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</u> (생략)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11조(결산 및 보고)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2조(존속기한)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(존속기한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3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